

공개용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9호)

2025. 4.

무 역 조 사 실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의 자료는 환산값과 증감률을 표시함
 - 환산값은 예시와 같이 기준 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예) 기준 연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변동폭(%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 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 목 차 >

I. 예비조사 개요	1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1
2. 조사대상물품	3
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5
4.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8
5. 산업 및 수급 현황	12
6. 비밀취급 여부 검토	15
II. 덤핑사실	19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19
2. 덤핑사실 조사경과	19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20
III. 국내산업의 피해	35
1.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35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36
가.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생산자	37
나.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37
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41
라.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46
IV. 덤핑물품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57
1. 덤핑물품과 국내산업 피해	57
2. 덤핑물품 이외 요인의 영향	60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68
V.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69

< 참고자료 >

참고 1. 국내산업피해 조사 경과	72
참고 2. 덤핑사실 조사 경과	73

< 붙임자료 > : 별책

붙임 1. 조사개시 공고문	별책
붙임 2.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계획	별책
붙임 3.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별책
■ 국내생산자	별책
■ 수입자	별책
붙임 4.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2차) 개최 계획	별책
붙임 5.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2차) 발언요지	별책
■ 국내생산자	별책
■ 수입자	별책
붙임 6.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제출 의견서	별책
■ 국내생산자	별책
■ 수입자	별책

* 붙임자료 별책 목록에 포함된 이해관계인 발언요지 및 제출의견(공개요약본)은,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7항(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비밀취급 자료를 제외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서면신청 방법 규정)에 따라 공개본을 요청한 이해관계인에게는 이미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서면(공문형식)으로 열람 신청을 하시기 바람

I. 예비조사 개요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가. 신청취지

- 주식회사 한솔케미칼은 '24.10.14.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신청인 주장 덤핑률 : 34.0%)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

나. 신청인

- 주식회사 한솔케미칼(이하 “한솔케미칼”)¹⁾
 -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영진, 김성중, 공인회계사 조노석

< 신청인 현황 (‘23년 기준) >

신청인		한솔케미칼
구 분		
설립일		1980.03.13.
대표자		박원환
주 소	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K-Tower 7,8층
	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231번지 전북 완주군 봉도읍 용암리 816
자본금		56,675백만원
매출액	총매출액	565,897백만원
	동종물품	[xxxxxxxxxxxx]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차아황산소다, 과산화수소, LATEX 등
종업원수		[xxxxxxxxxxxx]명

* 자료 : 조사신청서

1) 이하 본 보고서에서 회사명은 “한솔케미칼” 등과 같이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하여 기재함

다.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Ltd. (진허)	34%	대응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미대응

○ 조사대상공급자의 대리인

- 진허 및 그 관계사 : 법률사무소 신아(변호사 심규황), 주식회사 리인타
(회계사 김동준)

라. 조사대상기간

-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 : '23.1.1.부터 '23.12.31.까지
-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 '20.1.1.부터 '24.6.30.까지

2. 조사대상물품

가. 품명 :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 관세품목분류(HSK) : 2831.10.1000
- 관세율 : 기본관세율 8.0%, WTO협정세율 5.5%, 한-중FTA 협정세율 0%

나. 조사범위

- 가성소다²⁾, 개미산소다³⁾, 액체무수아황산⁴⁾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⁵⁾, 건조하여 제조하는, $\text{Na}_2\text{S}_2\text{O}_4$ 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 차아황산소다의 농도⁶⁾는 불문함

다.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액체상태에서 산성을 띠고 가용성을 지니고 있음

라. 용도

- 염색조제 및 합성섬유의 환원⁷⁾제정제, 펄프 표백제, 의약품 외 유기 및 무기 화학 제품의 표백 및 탈색제로 사용됨

2) 가성소다(NaOH) :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한 물질이며, 수용액을 순우리말로는 양잿물이라 함,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이라고도 불리며, 수용액은 무색 무취의 강한 알칼리성을 지니고 있음, 기초화학제품으로, 섬유, 비누, 제지, 식품, 전자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3) 개미산소다(HCOONa) : 영문명은 Sodium Formate 이며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흡습성이 있어 물에 녹이기 쉬우며 에틸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음. 용도로는 귀금속용 침전제 분석, 수렴제, 직물 염색 및 인쇄, 전기도금제 등에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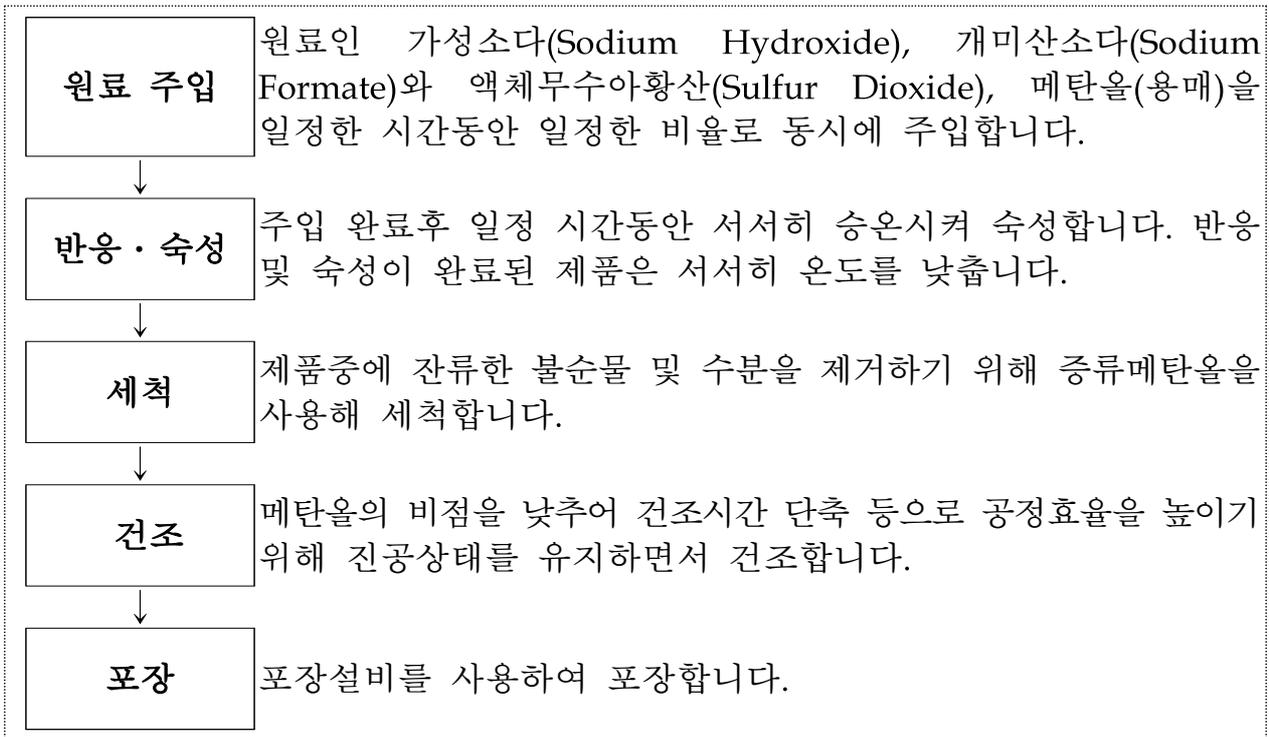
4) 액체무수아황산(L-SO₂) : 유황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화학물질로서 섬유 및 펄프의 표백제 및 착색제 제조시 사용되며, 식품첨가, 전분제조, 자동차 주물들 정화 등에 사용됨

5)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이 섭씨 80도 가량의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결합하여 차아황산소다가 합성되며,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6) 일반적으로 한국에 유통되는 제품은 차아황산소다 농도가 85%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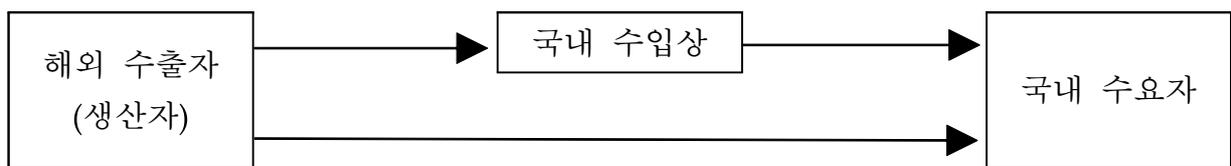
7) 환원은 산소와의 분리, 수소와의 결합, 산화수가 감소되는 경우로서 산소와의 결합, 수소의 떨어져 나감, 산화수의 증가의 경우를 말하는 산화와는 반대되는 개념임, 한 원소가 산화하면 다른 원소는 환원되기 때문에 항상 동반되어 발생함

마. 제조공정



바. 유통경로

- 조사신청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해외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국내 수요자가 직접 해외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있음



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 검토할 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 품명 및 조사범위 :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나. 물리적 특성 등

-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함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비교>

항목	기준	국내생산품	조사대상물품
품목		한솔 Sodium Hydrosulfite 88% grade	후베이 Sodium Hydrosulfite 88% grade
외관 ⁸⁾	White Crystalline Powder	White Crystalline Powder	White Crystalline Powder
냄새 ⁹⁾	Odorless or with a slight odor of sulfur dioxide	Odorless or with a slight odor of sulfur dioxide	Odorless or with a slight odor of sulfur dioxide
차아황산소다($\text{Na}_2\text{S}_2\text{O}_4$) ¹⁰⁾	[xxx]	[xxx]	[xxx]
메타중아황산소다($\text{Na}_2\text{S}_2\text{O}_5$) ¹¹⁾	[xxx]	[xxx]	[xxx]
탄산소다(Na_2CO_3) ¹²⁾	[xxx]	[xxx]	[xxx]
불용성물질 ¹³⁾	[xxx]	[xxx]	[xxx]

* 자료 : 조사신청서(한솔케미칼 자체시험결과서)

8) Appearance(외관) : 겉으로 보이는 색깔 및 입자 형태를 의미

9) Odor(냄새) : 냄새의 정도를 의미

10) $\text{Na}_2\text{S}_2\text{O}_4$ (차아황산소다) : 차아황산소다의 분자식으로 제품 내 농도를 의미

11) $\text{Na}_2\text{S}_2\text{O}_5$ (메타중아황산소다) : 제품 생산시의 부반응물로, 함량이 높을수록 제품 순도가 저하됨

12) Na_2CO_3 (탄산소다) : 차아황산소다 농도를 보정하기 위해 넣는 물질로 일정 이상의 비율 유지

13) 불용성물질 : 물에 용해되지 않는 불순물로, 값이 높을수록 제품성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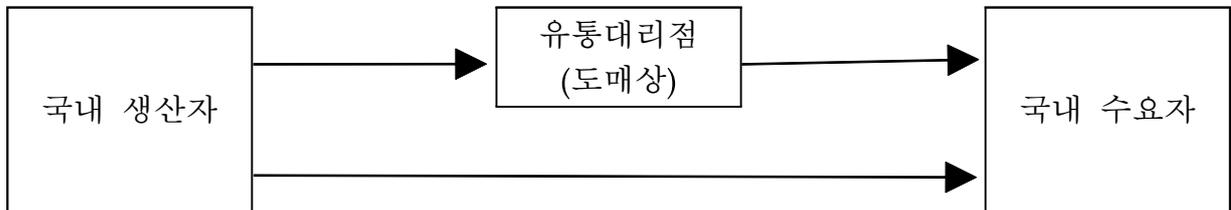
다. 제조공정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은 동일 또는 유사함

라. 유통경로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대리점 또는 수입자 단계를 거쳐서 최종수요자에게 유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유통경로가 유사함

<국내생산품의 유통경로>



마. 품질 및 소비자 평가

1) 수입자 주장¹⁴⁾

-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여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는 국내생산품을 선호함
- 수요자들은 고품질·고견뢰도를 요하는 염색가공(나염, 사염, 실켓소재 염색 등)에는 국내동종물품을 사용하고, 저품질 작업(기계세척, 화학 섬유염색, 면방 염색 등)에는 조사대상물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이 상호대체 사용되는 작업은 매우 제한적임

14) 수입자(다부씨엔에스, 팔사코리아) 답변서(“25.1.31. 제출) 및 청원물산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의견서 (“25.3.28. 제출) 참조

2) 신청인 주장¹⁵⁾

- 조사대상물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학식에 따라 생산되고 유통되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은 특정 화학식을 보유한 동일한 차아황산소다임
 - 섬유염색시 사용되는 역할, 용도는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동일하고 최근 중국산의 품질 향상으로 동종물품과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품질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차아황산소다의 수요자들은 염색가공 등을 하는 산업단지 내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차아황산소다 가격 공유가 용이하며 조사대상물품 및 동종물품은 가격이 가장 큰 구매 결정 요소임

3) 조사실 검토

- 수입자는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며, 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경우 국내생산품을 선호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으나,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차이를 이유로 두 물품이 동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본조사 과정에서 수입자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의 차이로 인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동종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기하는 경우, 동종관계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임

바. 종합 검토

- 조사실 검토 결과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등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상의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15) 국내생산자 추가의견서('25.4.8. 제출) 참조

4.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1)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한솔케미칼 1개사임

('23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조사신청 찬성여부	답변서 제출여부
한솔케미칼	xxx	100	찬성	제출
합 계	xxx	100		-

* 자료 : 조사신청서, 품목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의견서, 한솔케미칼 답변서

2) 수입자

- 수입자는 xxx, xxx, xxx 등임

('23년 기준)

수입자	수입량(톤)	비중(%)	답변서 제출여부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미제출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미제출
합 계	xxx	xxx	-

3) 수요자

- 수요자는 xxx, xxx, xxx 등임

나. 국내산업의 범위

< 검토할 사항 >

-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5항
 -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내생산자

- 해당 산업의 주무부처¹⁶⁾에 확인 결과, 국내 동종물품 생산자는 한솔케미칼 1개사임

16) 조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의견 참조

2)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가) 조사개시 당시 조사신청 찬반 현황

- 한솔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생산자로서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국내생산사업의 전부'에 해당하므로 조사신청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음

<국내생산자의 조사신청 찬·반 의견 현황>

(‘23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중(%)	조사신청 찬성여부
한솔케미칼	xxx	100	찬성
합 계	xxx	100	

* 자료 : 조사신청서, 품목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의견서

나) 국내생산자의 수입사실 여부

- (수입자 주장¹⁷⁾) 한솔케미칼은 국내수입자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혼합 및 재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
 - 한솔케미칼이 직접 수입한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수입자를 통해 조사대상물품을 공급받아 일부 판매했다면 수입한 실적이 있다고 봐야 함
- (신청인 주장¹⁸⁾)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므로 반덤핑조사 신청 자격에 결격이 없음
 - 조사대상물품의 저가판매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가동률 및 생산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국내 수입자로부터 구입하여 일부 혼합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국내수입자를 통한 구매는 '22년 1/4분기가 마지막이었음

17) 다부씨엔에스·청원물산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25.2.25~3.13. 제출) 및 다부씨엔에스 이해관계인 회의 후 의견서('25.3.11. 제출) 등 참조

18) 국내생산자 추가의견서('25.4.8. 제출) 참조

- (조사실 검토) 관세청 통관자료와 국내산업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한솔케미칼은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직접 또는 국내수입자를 통해 수입한 실적이 없음
- 관세법령에서는 국내생산자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6개월 이전에 수입했거나, 수입량이 근소한 경우 국내산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등의 반덤핑조사에서는¹⁹⁾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국내생산비중, 수입을 결정한 이유, 수입생산자의 주된 이익이 국내동종물품 제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산업 포함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다) 검토 종합

- 신청인인 한솔케미칼은 이용가능한 국내산업피해지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조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도 없으므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한솔케미칼은 국내동종물품의 유일한 생산자로 '국내생산산업의 전부'에 해당하므로,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에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한솔케미칼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함

19)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Certain Activated Carbon From China, Investigation No. 731-TA-1103 (Second Review), Publication 4797 (2018.6.), pp.10-12 등 참조.

5. 산업 및 수급 현황

가. 세계시장 동향

- 전 세계 차아황산소다 생산능력은 '22년도 기준 xxxxton이며, 중국해관총서, UN Comtrade 등에 의하면 '22년 기준 중국의 생산능력은 89만톤에 달하며, 조사된 11개 업체들의 가동률은 평균 5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희설비 규모는 약 4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전세계 차아황산소다 공급능력 현황(추정)²⁰⁾>

(단위: 톤)

지역	국가	CAPA	생산업체 수
아시아	중 국	xxx	xxx
	한 국	xxx	xxx
	인 도	xxx	xxx
	소 계	xxx	xxx
유 럽	독 일	xxx	xxx
	이탈리아	xxx	xxx
	벨기에	xxx	xxx
	소 계	xxx	xxx
총 계		xxx	xxx

- KOTRA 자료에 의하면 '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 중국의 차아황산소다의 對세계 수출 실적은 연간 약 xxx톤 규모로, 평균 수출 금액은 약 xxx 달러, 평균 단가는 xxx임
- 수출 동향을 보면 '17년~'19년 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급락 후 '21년에 다시 반등하여 '22년에 수출 물량 xxx 톤, 수출 금액 xxx달러의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23년은 수출 물량 xxx톤, 수출 금액 xxx 달러, 평균 단가 xxx달러/kg로 전년 대비 수출 수량 xxx% 하락, 수입 금액 xxx% 하락, 평균 단가 xxx% 하락 하였음

20)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및 감사보고서 등 공시 자료(신청인 제공)

<중국 차아황산소다 수출 추이>

<p><비공개></p>

- '23년 수출 물량 기준의 주요 수출 국가 순위를 보면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순이며 상위 15개 국가에 대한 수출 물량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증가하였고, 對한국 수출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량의 xxx%에서 xxx%로 하락하였음

<중국의 주요 수출 국가별 수출량>

연도 국가	'20년	'21년	'22년	'23년	순위 ('23년기준)
총수출량					
한국	<u>1,000</u>	<u>1,087</u>	<u>1,145</u>	<u>967</u>	-

나. 국내시장 수급현황

- 국내의 차아황산소다 수요는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가 xxx톤으로 xxx%, 국내생산품 수출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국내의 차아황산소다 공급은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이 xxx톤으로 xxx%, 외국산 제품 총수입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²¹⁾	증감률			
수 요	국내소비 (국산품 내수 + 총수입)	물량	<u>1,000</u>	<u>1,043</u>	4.3	<u>1,032</u>	-1.0	<u>833</u>	-19.3	-4.9	-5.0
		금액	<u>1,000</u>	<u>1,121</u>	12.1	<u>1,407</u>	25.5	<u>991</u>	-29.6	-13.1	-2.2
	수출 (국산품 수출)	물량	<u>1,000</u>	<u>1,309</u>	30.9	<u>1,090</u>	-16.7	<u>684</u>	-37.2	16.9	-6.9
		금액	<u>1,000</u>	<u>1,396</u>	39.6	<u>1,660</u>	19.0	<u>921</u>	-44.5	7.2	-1.0
합 계	물량	<u>1,000</u>	<u>1,146</u>	14.6	<u>1,055</u>	-8.0	<u>775</u>	-26.5	2.1	-5.7	
	금액	<u>1,000</u>	<u>1,234</u>	23.4	<u>1,511</u>	22.5	<u>962</u>	-36.3	-5.6	-1.7	
공 급	국내공급 (국산품 내수+수출)	물량	<u>1,000</u>	<u>1,166</u>	16.6	<u>1,029</u>	-11.7	<u>734</u>	-28.6	1.1	-7.1
		금액	<u>1,000</u>	<u>1,206</u>	20.6	<u>1,401</u>	16.2	<u>927</u>	-33.8	-5.5	-2.6
	수입 (총수입)	물량	<u>1,000</u>	<u>1,083</u>	8.3	<u>1,141</u>	5.3	<u>910</u>	-20.2	4.9	-1.6
		금액	<u>1,000</u>	<u>1,397</u>	39.8	<u>2,150</u>	53.8	<u>1,163</u>	-45.9	-5.9	3.2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1) 이하 본 보고서에서 상반기 증감률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 또는 감소한 정도를 의미함

6. 비밀취급 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비밀취급 요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
-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국내생산자) 조사신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의견서 등
- (조사대상공급자) 공급자 답변서 등
- (수입자, 수요자) 수입자 답변서, 수요자 답변서, 의견서 등

2) 정부 서류

- 본 예비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사유 제출 여부

- (국내생산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
- (조사대상공급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
- (수입자, 수요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함

다. 비밀취급 요청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 우려 여부 등

- (국내생산자) 생산현황 및 생산능력, 판매 및 재고현황, 판매가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제조원가, 고용 및 임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원재료 가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유료 구매자료 등은 영업상의 비밀이거나 정보공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국내생산자의 경쟁력 저하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함²²⁾
- (조사대상공급자) 생산현황, 판매 및 재고현황, 손익 및 재무상태, 제조원가, 연구개발 및 투자, 고용 및 임금현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등은 영업상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수입자, 수요자) 매출액, 수입실적, 통관비용, 판매실적, 가동률, 재고량, 거래업체 등 자료를 영업상 비밀자료로서 비공개 요청했으며²³⁾,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본 및 공개본을 제출함
-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비밀취급 요청자료는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료 제출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생산자,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22) 국내생산자 조사신청서('24.10.14. 제출),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25.2.7. 제출), 국내생산자 추가의견서('25.4.8. 제출) 등 참조

23) 수입자 및 수요자(청원물산, 팔사코리아, 다부씨엔에스, 대영화공, 한국HK트레이드, 수요자A) 답변서('25.1.24 ~ 2.7. 제출),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25.2.25. ~ 3.13. 제출), 이해관계인회의 이후 의견서('25.3.11. ~ 3.27.) 등 참조

- 제출된 자료 중 판매현황, 가격, 원가, 기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등은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비추어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함²⁴⁾

라. 비밀취급 자료의 요약서 제출 여부

- 비밀취급 요청 서류를 제출한 자들은 모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상세한 공개본을 제출함
- 특히, 국내생산자는 비밀 취급한 정보(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수입물량, 수입금액, 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판매현황 등)에 대해 조사대상기간 지수화된 자료 내지 증감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추세에 관한 설명을 포함함

마. 기타

- 수입 관련 자료(물량, 금액, 거래내역, 거래처 등)는 개별기업의 영업비밀(무역거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함

²⁴⁾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 참조

II. 덤핑사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²⁵⁾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²⁶⁾에 따라,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23.1.1.~'23.12.31.) 동안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하였음
- 그 결과,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이하 '진허')',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이하 '마오밍')' 2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음
-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의 대한민국 수출량은 중국 전체 조사대상물품의 대한민국 수출물량(약 xxx톤)의 약 xxx%(약 xxx톤)에 해당함

2. 덤핑사실 조사경과

- 조사실은 '24.12.20. 덤핑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한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답변기한 : '25.1.31.)
- 질의서에는 답변서를 미제출할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등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중 진허는 조사참여 신청기한('24.12.20.~'25.1.10.) 내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5.1.10.)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 의사를 표명했으며, 마오밍은 조사참여 신청기한 내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25) WTO반덤핑협정 제6.10조

- 관련된 수출자가 너무 많을 경우 당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할 수 있음(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 등).

26)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 포함)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조사대상공급자 진허는 '25.1.23.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²⁷⁾하였고, 조사실은 연장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5.1.31.이었던 답변기한을 '25.2.3.로 3일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음
- 이후 진허는 연장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 ('25.4.18., 온라인)하여, 예비덤핑률 산정 등 덤핑조사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가.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및 그 관계사

1) 공급자 개요

-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이하 '피신청인')는 중국 옌타이시(Yantai)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 겸 판매자임
- 피신청인은 중국 옌타이시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로, '82년부터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직접 내수 및 한국, 제3국 시장에 판매 하였음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가 있음
 - xxxxxxxxx : 조사대상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와 진하이(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의 xxxxxxxxx...

²⁷⁾ 중국 춘절 연휴로 인한 답변서 작성 시간 부족 등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당초 '25.1.31.에서 '25.2.7.로 연장 요청함.

- 진허(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내수, 한국 및 제3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xxx가 xxx%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진하이(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 :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내수, 한국 및 제3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xxx가 xxx%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진허 및 그 관계사의 주요 지분 관계 >

(비공개)

2) 공급자 판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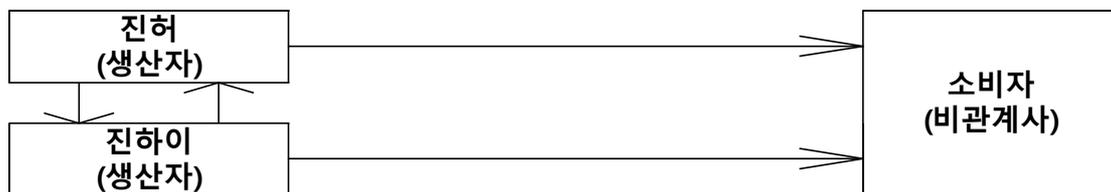
- 진허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²⁸)이며, 조사대상 물품의 매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임
-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톤을 생산하였으며,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계사 xxx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xxx, xxx의 일부를 구매하였음
- 내수판매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일부 물량(약 xxx톤)을 관계사 진하이에게 판매했으며, 수출판매는 비관계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음

28) 우리은행 2023년 평균매매율 184.54원/위안화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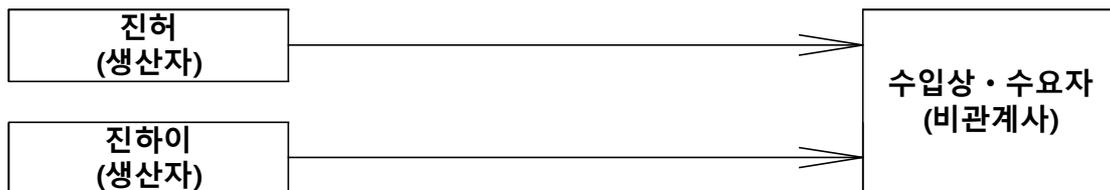
- 진하이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이며, 조사대상 물품의 매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 대한민국 수출액은 약 xxxRMB(약 xxx원)임
-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약 xxx톤을 생산하였으며,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계사 xxx로부터 주요 원재료인 xxxxxx의 일부를 구매하였음
- 내수판매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일부 물량(약 xxx톤)을 관계사 진허에게 판매했으며, 수출판매는 비관계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음

<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경로 >

· 내수판매



· 대한민국 수출



3) 답변서 제출 현황

- '24. 12. 20.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5.1.31.)
- '25. 1. 10.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5. 1. 23.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5. 1. 24. : 답변기한 연장 통보('25.1.31. → '25.2.3., 3일 연장)
- '25. 2. 3. : 답변서 접수
- '25. 4. 11.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통보
- '25. 4. 18.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²⁹⁾

4) 답변서 검토

- 조사실은 '진허' 및 '진하이'가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 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함
 - 또한, '진허' 및 '진하이'를 단일경제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함에 따라, 단일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5)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 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 다만, 원가자료의 경우에는 관계사로부터 구매³⁰⁾한 원재료비가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사의 생산원가를 활용하여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함

29) 피신청인은 내수 포장비 미인정 등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조사실은 본조사 시 현지실사 등을 통해 피신청인 의견 관련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

30) 조사대상기간동안 피신청인이 구매한 원재료 가운데 xxx을 관계사 xxxxxx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피신청인 제조원가의 xxx%를 차지하는 포장비에 포함된 포장 재료의 관계사 구매 여부, 적정 시장가격 등에 대하여는 본조사에서 보충질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신용비용의 신용기간 산정이 질의서에서 요청한 송장일과 대금 회수일 차이가 아닌 출하일과 대금회수일 차이가 사용된 점에 대해 본조사에서 보충질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임
- 아울러, 제조원가 관련 제품코드(Prodcod) 분류방법과 CCN과의 매칭 방법, 판매관리비 배분의 적절성, 부산물의 배분 방법 등에 대하여도 본조사에서 추가질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할 예정임

6)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 (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 ②농도, ③입자 크기를 제시함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³¹⁾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7) 정상가격

가)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31)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의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민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물량이므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 CCN별 내수판매량도 대한민국 수출량의 5% 미만 CCN은 없었음

(단위: 톤)

구 분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100)
P0850			
P0880			
P0900			
총합계			

나)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피신청인이 관계사에 판매한 조사대상물품 xxx톤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³²⁾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사간 거래 및 재판매가 이중으로 덤핑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제외함
- 이에, 피신청인 관계사가 최초로 비관계사에게 재판매한 가격을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함

32) 조사실은 특수관계자와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가중평균 판매가격 대비 xxx%(진허), xxx%(진하이)로 조사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함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및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³³⁾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톤)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P0850				원가미만 제외
P0880				원가미만 제외
P0900				원가미만 제외

- 피신청인이 구매한 주요 원재료 중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이산화황) 비용이 정상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이 i)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과 ii)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가격, iii)관계사인 원재료 공급자의 생산원가 등을 검토함
 - 피신청인은 주요 원재료 중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이산화황의 가격이 관계사의 생산원가보다 낮아, 관계사의 생산원가 자료를 활용하여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조정함
- 판매관리비(SG&A)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영업외 수익 및 비용, 세금과공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합리적 배분 등을 검증함
 - 피신청인의 자료를 검토하여, 판매관리비에서 보조금 등의 영업외 수익을 제외함

³³⁾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다)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피신청인의 포장비용을 조정함
 - 조사대상물품은 포장비용이 제조원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투입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비용³⁴⁾,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 별 계산방식³⁵⁾ 등 질의서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답변서에서 합리적인 설명 및 충분한 증빙이 없었으므로, 정상가격 조정에서 제외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톤)

구분	정상가격(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임	신용비용 ³⁶⁾	
P0850				
P0880				
P0900				

8) 덤핑가격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함

나) 덤핑가격의 조정

- 조사신청물품이 증치세³⁷⁾ 환급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덤핑가격에서 증치세율(13%) 만큼을 조정요소로 적용함

34) 질의서 G-2. 일반사항 중 g-1. 주요 투입요소별 일반 정보, g-2.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의 정보
 35)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 포장 자재비, 인건비, 가공비별 계산 방식, 포장 자재비의 경우 소요되는 자재 리스트
 36) xxxxxx
 37) 증치세는 중국 내 재화나 용역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성격의 세금임.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톤)

구분	덤핑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운임	핸들링, 해상운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포장비용	증치세	
P0880							
P0900							

9)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³⁸⁾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10) 예비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은 15.15%임

(단위 : RMB/톤)

구분	대한국 수출량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P0880							
P0900							
예비덤핑률							15.15%

* 예비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38)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나. 마오밍(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답변서 미제출 공급자)

1) 답변서 제출 현황

- 마오밍(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은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답변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음
- '24. 12. 20.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5.1.31.)
- '25. 1. 10.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기한(미제출)
- '25. 1. 31. : 답변서 제출기한(미제출)
- '25. 4. 11.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통보
- '25. 4. 18.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미참석)

2) 자료의 사용

-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2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 자료 및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르면, 조사대상공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바,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 가능함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1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간('24.12.20.~'25.1.31.)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함

-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덤핑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입통계는 조사대상기간 중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통관자료로 공식 수입통계에 해당함
-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비용은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인 신청서의 자료로, WTO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에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출처로 신청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특히,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는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덤핑률은 WTO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2,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로서 관세청 통관자료와 조사신청서의 자료를 사용함

3)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 (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 ②농도, ③입자 크기를 제시함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³⁹⁾를 가졌으나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음

³⁹⁾ 이해관계인은 관보가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 CCN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4) 정상가격

- 정상가격은 조사신청서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구성가격을 사용함
 - 시장조사기관 및 구매견적 등을 통해 산출한 주요 원재료의 제조원가와 중국 생산자의 판매관리비 및 이윤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출하고,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 (제조원가) 원재료비(가성소다⁴⁰), 이산화황⁴¹, 개미산소다⁴²), 간접재료비⁴³, 에너지 비용(전기⁴⁴, 스팀⁴⁵), 인건비 및 제조경비⁴⁶)를 제조원가로 적용함
 - (판매관리비 및 이윤) 중국 생산자⁴⁷의 '23년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원가 대비 판매관리비용 및 영업이익률⁴⁸)을 적용함

조정전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RMB/톤)

제조원가						판매 관리비	이윤	구성가격
원재료비	간접재료비	에너지비용	인건비	제조경비	소계			

- 조정요소는 조사신청서의 내륙운임을 적용함
 - 주요 생산자의 중국 내 공장(Yantai, Hubei, Maoming)에서 인접한 항구까지에 대해, 신청인이 비관계사인 xxxxxx에 견적의뢰한 운임단가를 내륙운임 조정요소로 적용함

40) 중국 xxxxxx의 가성소다에 대한 구매견적
 41) 시장조사기관인 xxxxxx에 공시된 중국내 '23년 4, 7, 10월 이산화황의 평균가격. xxxxxx...
 42) 중국 xxx, xxx의 개미산소다 가격에 대한 구매견적
 43) 중국 xxx의 냉연강판 포장캔에 대한 구매견적
 44) 주요 생산자가 위치한 지역(Anhui, Hubei, Zhejiang)의 '23년 1~12월 기간동안의 평균 전력 비용
 45) 주요 생산자가 위치한 지역(Anhui, Hubei, Zhejiang)의 '23년 1~12월 기간동안의 평균 스팀 비용
 46) 신청인의 '23년 톤당 인건비 및 제조경비에 xxx에서 공시된 '23년 중국-한국의 제조업 임금 비율을 환산한 비용. xxxxxx...
 47) xxxxxx
 48) 영업이익률 = (영업총수입 - 영업총원가) / 영업총원가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 RMB/톤)

조정전 정상가격(a)	조정사항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임	

5) 덤핑가격

- 덤핑가격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3.1.1~12.31.) 동안 수입신고된 피신청인 수출물품의 평균수입가격을 사용함
 - 수입통관자료를 통해 산출된 평균 수입단가(xxxUSD/톤)에 '23년 연평균 환율(7.08RMB/USD)⁴⁹⁾을 적용하여 덤핑가격을 산출함
- 조정요소는 증치세와 신청인이 비관계사에 견적의뢰한 해상운임⁵⁰⁾, 통관하역비⁵¹⁾, 내륙운임⁵²⁾을 적용함

49) 미국 연방준비은행 세인트루이스(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에서 운영하는 경제 데이터 사이트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https://fred.stlouisfed.org>)를 통해 확인된 '23년 평균환율을 적용함

50) 주요 생산자의 중국 내 공장(Yantai, Hubei, Maoming)에서 인접한 항구에서 우리나라 부산항으로의 해상운임에 대해, 비관계사인 xxxxxx에 문의한 견적.

51) 주요 생산자의 중국 내 공장(Yantai, Hubei, Maoming)에서 인접한 항구에서 우리나라로 선적시 발생하는 통관하역비 등의 부대비용에 대해, 비관계사인 xxxxxx에 문의한 견적.

52) 주요 생산자의 중국 내 공장(Yantai, Hubei, Maoming)에서 인접한 항구까지에 대해, 비관계사인 xxxxxx에 문의한 견적.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 RMB/톤)

조정전 덤핑가격(a)	조 정 사 항					조정된 덤핑가격 (d)=(a)-(b)
	증치세	해상운임	통관하역비	내륙운임	소계(b)	

6) 과세가격

- 덤핑가격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23.1.1~12.31.) 동안 수입신고된 피신청인 수출물품의 평균수입가격(xxxRMB/톤)을 사용함

7) 예비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은 33.97%임

(단위 : RMB/톤)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예비덤핑률 (E=C/D×100)
				33.97%

다. 그 밖의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은 관세청 통관자료 및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33.97%로 산정함

4. 덤핑사실 조사결과 종합

- 덤핑사실을 조사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5.8조⁵³⁾ 등에서 규정한 최소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15.15~33.97%의 예비덤핑률이 산정되어 덤핑 방지관세의 대상이 되는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15.15%	대응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3.97%	미대응
	그 밖의 공급자	33.97%	-

53) “(전략)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이러한 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후략)”.

Ⅲ. 국내산업의 피해

1.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이 발전(확립)중인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전중인 산업이라고 인정되면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발전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사업계획 및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하여 검토함

관련 법규

-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IV.5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판단 근거)
 - 국내산업의 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판정은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생산자가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보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당해 산업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판단함
 -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
 -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의 비교
 - 국내산업의 안정성 여부는 국내생산물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생산설비의 안정적 가동 여부,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등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생산자인 한솔케미칼은 1986년 국내 최초로 차아황산소다를 생산하여 현재까지 제조 및 판매해 왔고, 현재 국내 유일한 생산자로 동종 물품 매출액(내수 및 수출)은 '23년 기준 xxx백만원에 달함
- 생산 지속 여부, 시장점유율, 생산 및 매출 규모 등을 고려시 국내산업은 이미 발전(확립)된 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건 조사에서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지연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없음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관련 법규

○ WTO반덤핑협정 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WTO반덤핑협정 3.4조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가. 산업피해 분석 대상 국내생산자

- 본 보고서의 국내산업 범위 검토 결과에 따라 한솔케미칼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을 대상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조사함

나.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 검토할 사항 >

-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중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1)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10.1% 증가, '22년 xxx톤으로 8.1% 증가하였고, '23년 xxx톤으로 21.3% 감소하는 등 조사 대상기간 중 연평균 1.6% 감소하였음

< 덤핑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	물량	<u>1,000</u>	<u>1,101</u>	10.1	<u>1,189</u>	8.1	<u>936</u>	-21.3		4.0	-1.6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양은 다소 감소(연평균 -1.6%)했으나, 국내소비 감소(연평균 -5.0%) 대비 그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같은 기간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는 7.3% 감소하여 국내소비 및 덤핑물품 수입물량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3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였으며, '21년의 경우 국내소비가 증가(4.3%)한 상황에서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더 큰 폭으로 증가(10.1%)한 반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1.8% 증가에 그쳤고
 - '22년과 '24년 상반기는 국내소비가 각각 1.0%, 4.9% 감소했음에도,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오히려 증가('22년 8.1%, '24.上 4.0%)하였고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감소('22년 -5.2%, '24.上 -11.4%)하였음
-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 '24년 상반기 xxx%로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5.5%p 상승하였음

-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 '24년 상반기 xxx%로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5.7%p 하락하였음
 - 기타국산 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로 하락하였다가 '23년 xxx%, '24년 상반기 xxx%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0.3%p 상승하였음
- 이상의 검토 결과,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국내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내소비 및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관 매 물 량	국내소비 (a=b+e)	<u>1,000</u>	<u>1,043</u>	4.3	<u>1,032</u>	-1.0	<u>833</u>	-19.3		-4.9	-5.0
	총수입 (b=c+d)	<u>1,000</u>	<u>1,083</u>	8.3	<u>1,141</u>	5.3	<u>910</u>	-20.2		4.9	-1.6
	덤핑물품 수입(c)	<u>1,000</u>	<u>1,101</u>	10.1	<u>1,189</u>	8.1	<u>936</u>	-21.3		4.0	-1.6
	기타국산 수입(d)	<u>1,000</u>	<u>713</u>	-28.7	<u>122</u>	-82.9	<u>364</u>	198.8		28.4	-1.8
	동종물품 내수판매(e)	<u>1,000</u>	<u>1,018</u>	1.8	<u>965</u>	-5.2	<u>785</u>	-18.6		-11.4	-7.3
시 장 점 유 율	덤핑물품(c/a)			2.0%p		3.5%p		-1.0%p		3.6%p	5.5%p
	기타국산(d/a)			-0.6%p		-1.0%p		0.6%p		0.5%p	0.3%p
	국내동종물품(e/a)			-1.5%p		-2.6%p		0.5%p		-4.1%p	-5.7%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3) 이해관계인 의견 및 조사실 검토

- (수입자 주장⁵⁴) '22년 덤핑물품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22년 2,896톤에서 '23년 2,280톤, '24년 2,194톤⁵⁵)으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신청인 주장⁵⁶) '24년 차아황산소다의 전체(덤핑물품+기타국산)수입물량은 2,307톤이며, '25년 3월 수입량⁵⁷)도 234톤으로 1월 162톤, 2월 109톤 대비 크게 증가함
- (조사실 검토) '22년 수입량 증가가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24년 총 수입물량은 2,307톤이며, 이 중 덤핑물품 수입량은 2,194톤으로 '23년 수입량 2,280톤에 비해 다소 감소(-3.8%)함
 - 그러나 '2)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국내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54) 청원물산 수입자답변서('25.1.24. 제출), 이해관계인회의 이후 의견서('25.3.27. 제출) 등 참조

55)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TRASS

56) 국내생산자 추가의견서('25.4.8. 제출) 등 참조

57)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TRASS 잠정치 조회

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 검토할 사항 >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판매 되었는지 또는 덤핑물품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 또는 가격인상 억제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3.2조 중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1)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다가 '23년 xxx천원, '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하락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4% 상승함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다가 '23년 xxx천원, '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하락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4% 상승함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판매가격 등락 방향이 일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한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연도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판매 가격	덤핑물품	<u>1,000</u>	<u>1,307</u>	30.7	<u>1,934</u>	48.0	<u>1,300</u>	-32.8		-9.9	5.4
	동종물품	<u>1,000</u>	<u>1,010</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덤핑물품이 저가 판매되었는지 여부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같은 기간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음

나)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 덤핑물품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고 그 가격차이는 '20년 - xxx천원, '21년 - xxx천원, '22년 - xxx천원으로 차이가 줄어들다가, '23년 - xxx천원, '24년 상반기 - xxx천원으로 가격차이가 다시 벌어짐
- 동종물품 대비 덤핑물품의 가격비율을 보면, 덤핑물품은 '20년 동종물품에 비해 xxx%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21년 xxx%, '22년 xxx%로 가격비율이 올라가다가, '23년과 '24년 상반기는 동종물품의 xxx%, xxx% 수준으로 떨어짐
- 특히,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23년 32.8% 하락, '24년 상반기 9.9% 하락하면서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 하락('23년 -1.1%, '24년 상반기 -5.2%)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307</u>	30.7	<u>1,934</u>	48.0	<u>1,300</u>	-32.8	-9.9	5.4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u>	<u>1,010</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가격차이(a-b)	(-)	(-)	음수축소	(-)	음수축소	(-)	음수확대	음수축소	
가격비율(a/b)			16.2%p		24.6%p		-32.1%p	-5.0%p	4.6%p

다)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 덤핑물품은 '22년을 제외하고는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고, 동종물품의 제조원가 비중이 xxx% 이상으로 높은 상황에서, 동종물품 제조원가가 '22년 29.8%, '23년 16.5% 급등하였으나 판매가격은 '22년 18.8% 상승에 그쳤고, '23년에는 오히려 1.1% 하락하여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 제조원가는 연평균 5.2% 상승한 반면, 판매가격은 연평균 3.4%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010</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제조원가(b)	<u>1,000</u>	<u>946</u>	-5.5	<u>1,227</u>	29.8	<u>1,429</u>	16.5	-19.2	5.2
제조원가비중(b/a)			-5.4%p		7.2%p		15.2%p	-15.7%p	6.3%p
덤핑물품 판매가격(b)	<u>1,000</u>	<u>1,307</u>	30.7	<u>1,934</u>	48.0	<u>1,300</u>	-32.8	-9.9	5.4

-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 대비 '22년 xxx%, '23년 xxx%, '24년 상반기 xxx% 수준으로, 국내생산자는 '23년 영업적자 전환 이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인상이 필요했으나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이 지속 저가판매되고, 덤핑물품과의 경쟁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동종물품 가격을 목표판매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하하여 덤핑물품과의 가격경쟁에 대응했던 것으로 보임

<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목표판매가격 ⁵⁸⁾ (a)	<u>1,000</u>	<u>980</u>	-2.0	<u>1,208</u>	23.2	<u>1,496</u>	23.8		-23.4	5.3
실제판매가격(b)	<u>1,000</u>	<u>1,010</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가격차이(b-a)	(-)			(-)		(-)				
가격비율(b/a)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307</u>	30.7	<u>1,934</u>	48.0	<u>1,300</u>	-32.8		-9.9	5.4
영업이익	<u>1,000</u>	<u>1,428</u>	42.8	<u>1,062</u>	-25.6	(-)	적자전환		적자감소	적자전환

- 이상의 검토 결과, 덤핑물품은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58) 목표판매가격 = (내수판매 톤당 매출원가 + 내수판매 톤당 판매비) / (1-목표영업이익률)
 - 목표영업이익률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을 적용함
 - 국내산업은 ‘21년 내수판매 영업이익률(xxx%)을 목표영업이익률로 제출함

라) 이해관계인 의견 및 조사실 검토

<수입자 주장⁵⁹⁾>

- '23년도 덤핑물품 판매가격 하락은 코로나 해제로 인해 '20년 가격으로 원복된 사항이며, '24년도 하반기 이후 중국의 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CIF가격 기준 '25년 1월 xxx천원, '25년 2월 xxx천원으로 상승하고 있음

<신청인 주장⁶⁰⁾>

- 판매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원화로 환산한 가격 즉 환율 상승에 따른 영향이며, '25년 3월은 오히려 xxx천원⁶¹⁾으로 하락하였음

<조사실 검토>

- '23년도 덤핑물품 판매가격 하락이 코로나 해제로 인한 것이라는 수입자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수입자 측이 주장한 '25년 1월, 2월 가격이 이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보다 인상되었다고 할지라도, 동종물품 판매가격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저가 수준임

59) 청원물산 수입자답변서('25.1.24. 제출), 청원물산, 다부씨엔에스 이해관계인회의 이후 의견서('25.3.11., 3.28. 제출) 등 참조

60) 국내생산자 추가의견서('25.4.8. 제출) 등 참조

61)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TRASS 추정치 통계

라.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지표에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피해지표 : 생산량감소 · 가동률하락 · 재고증가 · 판매량감소 · 시장점유율축소 · 가격하락 · 이윤감소 · 투자수익감소 · 고용감소 · 임금하락 · 자본조달애로 · 투자축소, 기술개발 등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 WTO반덤핑협정 3.4조 중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 망라적이지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 생산량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하였음
- 국내산업 생산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17.6% 증가하였으나, '22년 xxx톤으로 5.0% 감소, '23년 xxx톤으로 34.6% 감소하였고, '24년 상반기는 xxx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7% 감소함
- 국내산업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10.8%p 상승하였으나, '22년 xxx%로 3.6%p 하락, '23년 xxx%로 23.7%p 하락하였고, '24년 상반기는 xxx%로 전년 동기대비 13.3%p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6.4%p 하락함

< 생산현황 >

(단위 : 톤,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000</u>	-	<u>1,000</u>	-	<u>1,000</u>	-		-	-
생산량(b)	<u>1,000</u>	<u>1,176</u>	17.6	<u>1,117</u>	-5.0	<u>731</u>	-34.6		32.0	-2.7
가동률(b/a)			10.8%p		-3.6%p		-23.7%p		13.3%p	-6.4%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2) 판매 및 재고

-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1.8% 증가 후, '22년 xxx톤으로 5.2% 감소, '23년 xxx톤으로 18.6% 감소, '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3% 감소함
- 동종물품 기말재고는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10.3% 감소 후, '22년 xxx톤, '23년 xxx톤, '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0.1% 증가함

- 동종물품의 총출하 물량 대비 재고율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하락한 후, '22년 xxx%, '23년 xxx%, '24년 상반기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39.9%p 증가함

< 판매 및 재고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천원/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기초재고(a)	물량	<u>1,000</u>	<u>733</u>	-26.7	<u>808</u>	10.3	<u>2,516</u>	211.2		-12.2	37.7
생산량(b)	물량	<u>1,000</u>	<u>1,176</u>	17.6	<u>1,117</u>	-5.0	<u>731</u>	-34.6		32.0	-2.7
총출하 (c=d+e+f)	물량	<u>1,000</u>	<u>1,164</u>	16.4	<u>1,028</u>	-11.7	<u>735</u>	-28.5		1.3	-7.0
	금액	<u>1,000</u>	<u>1,206</u>	20.6	<u>1,401</u>	16.2	<u>928</u>	-33.8		-5.5	-2.6
	단가	<u>1,000</u>	<u>1,037</u>	3.7	<u>1,365</u>	31.6	<u>1,264</u>	-7.4		-6.7	4.8
내수판매(d)	물량	<u>1,000</u>	<u>1,018</u>	1.8	<u>965</u>	-5.2	<u>786</u>	-18.6		-11.4	-7.3
	금액	<u>1,000</u>	<u>1,029</u>	2.9	<u>1,159</u>	12.6	<u>933</u>	-19.5		-16.1	-4.2
	단가	<u>1,000</u>	<u>1,011</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수출(e)	물량	<u>1,000</u>	<u>1,309</u>	30.9	<u>1,090</u>	-16.7	<u>685</u>	-37.2		17.0	-6.9
	금액	<u>1,000</u>	<u>1,396</u>	39.6	<u>1,661</u>	19.0	<u>920</u>	-44.6		7.2	-1.0
	단가	<u>1,000</u>	<u>1,066</u>	6.6	<u>1,522</u>	42.8	<u>1,346</u>	-11.6		-8.3	6.3
타계정대체(f)	물량	<u>1,000</u>	<u>750</u>	-25	<u>775</u>	3.3	<u>724</u>	-6.5		46.7	2.4
기말재고 (g=a+b-c)	물량	<u>1,000</u>	<u>897</u>	-10.3	<u>2,791</u>	211.2	<u>2,451</u>	-12.2		118.8	70.1
재고율(g/c)	물량			-0.9%p		7.6%p		24%p		23.5%p	39.9%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3) 시장점유율

- 국내 동종물품 시장점유율은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3년 xxx%로 소폭 상승 후, '24년 상반기 xxx%로 다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5.7%p 하락함
- 덤핑물품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3년 xxx%로 소폭 하락 후, '24년 상반기 xxx%로 다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5.5%p 상승함
- 기타국산 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 '24년 상반기 xxx%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였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0.3%p 상승함
-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세가 상반된 변동을 보이고, 동종물품의 점유율 하락분(-5.7%)의 상당 부분이 덤핑물품의 점유율 증가(5.5%p)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변동폭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 동종물품		-1.5%p	-2.6%p	0.5%p	-4.1%p	-5.7%p				
덤핑물품		2.0%p	3.5%p	-1.0%p	3.6%p	5.5%p				
기타국산 수입물품		-0.6%p	-1.0%p	0.6%p	0.5%p	0.3%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으로 5.5% 하락했다가, '22년 xxx천원으로 29.8% 상승, '23년 xxx천원으로 16.5% 상승하였고, '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2%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2% 상승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료가 제조원가의 xxx%~xxx%를 차지하며 동종물품 가격에 재료비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임
- 재료비는 '21년 1.9% 소폭 하락했으나 '22년 28.1% 급상승하였고 '23년 6.3% 상승 후, '24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11.4%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4% 상승함
-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xxx%~xxx%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23년의 경우, 동종물품은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됨
-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는 연평균 6.4% 상승하고, 단위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5.2% 상승했으나,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3.4% 상승에 그쳤는 바, 덤핑물품이 조사대상기간 전반적으로 동종물품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내수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a)		<u>1,000</u>	<u>1,011</u>	1.1	<u>1,201</u>	18.8	<u>1,188</u>	-1.1		3.4
단위당 제조원가(b=c+d+e)		<u>1,000</u>	<u>945</u>	-5.5	<u>1,227</u>	29.8	<u>1,429</u>	16.5		5.2
재료비(c)		<u>1,000</u>	<u>981</u>	-1.9	<u>1,257</u>	28.1	<u>1,336</u>	6.3		6.4
제조원가 중 재료비 비중				1.8%p		-0.6%p		-4.3%p		4.5%p
노무비(d)		<u>1,000</u>	<u>912</u>	-8.8	<u>1,058</u>	16.0	<u>1,472</u>	39.1		3.3
경비(e)		<u>1,000</u>	<u>911</u>	-8.9	<u>1,261</u>	38.4	<u>1,536</u>	21.8		4.5
단위당 제조원가 비중(b/a)				-5.4%p		7.3%p		15.2%p		6.3%p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307</u>	30.7	<u>1,934</u>	48.0	<u>1,300</u>	-32.8		5.4
동종물품 생산량		<u>1,000</u>	<u>1,176</u>	17.6	<u>1,117</u>	-5.0	<u>731</u>	-34.6		-2.7

* 자료 : 국내산업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5) 덤핑마진의 크기

- 조사대상물품의 예비덤핑률은 15.15~33.97%로 덤핑마진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이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을 감안할 때 덤핑마진의 크기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이윤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내수 매출액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으로 2.9% 증가, '22년 xxx백만원으로 12.6% 증가하였으나, '23년 xxx백만원으로 19.5% 감소, '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2% 감소함
 -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으로 42.8% 증가하였으나, '22년 xxx백만원으로 25.6% 감소한 후 '23년 -xxx백만원으로 적자전환되었고, '24년 상반기에도 적자가 지속됨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2.7%p 상승 후, '22년 xxx%로 3.3%p 하락하기 시작해 '23년 -xxx%, '24년 상반기 -xxx%를 기록함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u>1,000</u>	<u>1,029</u>	2.9	<u>1,159</u>	12.6	<u>933</u>	-19.5		-16.1%	-4.2%
매출원가(b)		<u>1,000</u>	<u>1,002</u>	0.2	<u>1,173</u>	17.1	<u>1,197</u>	2.0		-34.0%	-2.2%
매출총이익(c=a-b)		<u>1,000</u>	<u>1,157</u>	15.7	<u>1,092</u>	-5.6	<u>-289</u>	-126.5		-165.6%	-15.6%
판매관리비(d)		<u>1,000</u>	<u>977</u>	-2.3	<u>1,112</u>	13.8	<u>1,005</u>	-9.6		-11.5%	-4.1%
영업이익(e=c-d)		<u>1,000</u>	<u>1,428</u>	42.8	<u>1,062</u>	-25.6	(-)	적자전환		적자감소	적자전환
영업이익률(e/a)				2.7%p		-3.3%p	(-)	음수전환		음수감소	음수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7) 투자수익률

-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년 - xxx%에서 '21년 xxx%, '22년 xxx%로 상승했으나, '23년 - xxx%, '24년 상반기 - xxx%로 부(-)의 투자수익률을 유지함

< 투자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영업이익 ⁶²⁾ (a)	(-)			후자전환		160.2	(-)	적자전환		적자감소	적자감소	
투자자산총액 ⁶³⁾ (b)	<u>1,000</u>	<u>1,150</u>	15.0	<u>1,221</u>	6.2	<u>1,012</u>	-17.1			-3.9	18.7	
투자수익률(c)	(-)		양수전환		2.5%p	(-)	음수전환			음수감소	음수감소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8) 현금흐름

- 국내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년 - xxx백만원, '21년 -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 xxx백만원, '24년 상반기 - xxx백만원으로, '22년을 제외하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현금 순유출이 발생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당기순이익(a)	(-)	(-)		적자감소		후자전환	(-)	적자전환		적자감소	적자감소	
현금이 유출 없는 비용 등의 가산 및 차감(b)	<u>1,000</u>	<u>1,865</u>	86.5	<u>1,725</u>	-7.5	<u>1,208</u>	-30.0			-22.1	-2.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c)	(-)	(-)	음수확대	(-)	음수감소	(-)	음수감소			음수감소	음수확대	
이지의 수취 및 지급(d)	(-)	(-)	음수감소	(-)	음수감소	(-)	음수감소			음수감소	음수감소	
배당금 수취 및 법인세 지급(e)	(-)	(-)	음수확대	(-)	음수확대	(-)	음수감소			음수감소	음수감소	
영업현금흐름 (a+b+c+d+e)	(-)	(-)	음수확대		양수전환	(-)	음수전환			음수감소	음수감소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62) 동종물품 내수+수출 판매 영업이익

63) 총 투자자산액중 동종물품의 매출액 비율

9) 고용 및 임금

- 국내생산자의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사무직)은 '20년에서 '21년까지 xxx명을 유지하다가 '22년 xxx명으로 감소 후, '24년 상반기까지 xxx명으로 연평균 1.4% 감소함
- 1인당 평균임금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으로 3.3% 감소, '22년 xxx백만원으로 10.9% 증가, '23년 xxx백만원으로 15.0% 감소, '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8% 감소하였음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명,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평균 고용인원	생산직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0.0	0.0
	사무직	<u>1,000</u>	<u>1,000</u>	0.0	<u>833</u>	-16.7	<u>833</u>	0.0		0.0	-4.5
	합계	<u>1,000</u>	<u>1,000</u>	0.0	<u>944</u>	-5.6	<u>944</u>	0.0		0.0	-1.4
연평균 1인당 임금	생산직	<u>1,000</u>	<u>955</u>	-4.5	<u>1,095</u>	14.7	<u>910</u>	-16.9		8.7	-0.8
	사무직	<u>1,000</u>	<u>960</u>	-4.0	<u>1,016</u>	5.8	<u>908</u>	-10.6		23.0	-1.1
	합계	<u>1,000</u>	<u>967</u>	-3.3	<u>1,072</u>	10.9	<u>912</u>	-15.0		12.9	-0.8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0) 생산성

- 1인당 생산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17.6% 증가, '22년 xxx톤으로 0.6% 증가했고, '23년 xxx톤으로 34.6% 감소, '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 감소함
- 1인당 매출액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으로 20.6% 증가, '22년 xxx백만원으로 23.0% 증가하였으나, '23년 xxx백만원으로 33.8% 감소, '24년 상반기 xxx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 감소함

- 1인당 부가가치는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 '24년 상반기 - xxx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생산성 관련 지표 >

(단위 : 명, 톤, 백만원, 톤/명, 백만원/명,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고용인원(a)		<u>1,000</u>	<u>1,000</u>	0.0	<u>944</u>	-5.6	<u>944</u>	0.0		0.0	-1.4
생산량(b)		<u>1,000</u>	<u>1,176</u>	17.6	<u>1,117</u>	-5.0	<u>731</u>	-34.6		32.0	-2.7
총매출액(c)		<u>1,000</u>	<u>1,206</u>	20.6	<u>1,401</u>	16.2	<u>928</u>	-33.8		-5.5	-2.6
총부가가치(d)		<u>1,000</u>	<u>794</u>	-20.7	<u>598</u>	-24.7	<u>286</u>	-52.1		음수전환	음수전환
1인당 생산량(b/a)		<u>1,000</u>	<u>1,176</u>	17.6	<u>1,183</u>	0.6	<u>774</u>	-34.6		32.0	-1.3
1인당 매출액(c/a)		<u>1,000</u>	<u>1,206</u>	20.6	<u>1,483</u>	23.0	<u>982</u>	-33.8		-5.5	-1.2
1인당 부가가치(d/a)		<u>1,000</u>	<u>793</u>	-20.7	<u>633</u>	-20.2	<u>303</u>	-52.1		음수전환	음수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1) 성장성

- 내수 영업이익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으로 42.8% 증가하였다가, '22년 xxx백만원으로 25.6% 감소, '23년 - xxx백만원으로 적자 전환하여 '24년 상반기까지 적자가 지속됨
-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1.5%p 감소, '22년 xxx%로 2.6%p 감소하였다가, '23년 xxx%로 0.5%p 소폭 증가하였으나, '24년 상반기 xxx%로 4.1%p 다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5.7%p 하락함
-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10.8%p 상승하였고, '22년 xxx%로 3.6%p 하락, '23년 xxx%로 23.7%p 추가 하락하였고, '24년 상반기 xxx%로 13.3%p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6.4%p 하락함

< 성장성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내수 영업이익		1,000	1,428	42.8	1,062	-25.6	(-)	적자전환		적자감소	적자전환
시장점유율				-1.5%p		-2.6%p		0.5%p		-4.1%p	-5.7%p
가동률				10.8%p		-3.6%p		-23.7%p		13.3%p	-6.4%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2) 자본조달능력

- 국내산업의 자본조달능력을 나타내는 영업이익은 '23년 이후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자본조달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 자본조달능력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 영업이익 ⁶⁴⁾		(-)		흑자전환		160.2	(-)	적자전환		적자감소	적자감소
- 내수 영업이익		1,000	1,428	42.8	1,062	-25.6	(-)	적자전환		적자감소	적자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⁶⁵⁾

-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24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비투자를 하였던 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설비투자 금액은 '20년 xxx백만원,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4년 상반기는 xxx원으로 감소함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1,000	26	-97.4	224	760.0	106	-52.5		-100.0	-
연구개발		0	0	-	0	-	0	-		-	-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64) 총 영업이익 = (내수판매 + 수출) 영업이익

65)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개정(2020.12.29.)에 따라 기술개발(연구개발)은 의무 검토사항은 아니나, 신청인이 조 사신청서 및 생산자 답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의 종합적 검토 대상에 포함함

14) 종합 검토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와 통계 등 이용가능한 자료 및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각 산업피해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수행함
- 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절대적으로는 다소 감소(연평균 -1.6%)하였으나, 국내소비 감소(연평균 -5.0%)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5.5%p)한 데 비해,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 하락(-5.7%p)하였는 바, 덤핑물품의 지속적인 저가 판매로 인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상승이 억제된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xxx%~xxx%로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와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생산자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하락 및 적자 지속 등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생산량(연평균 -2.7%), 가동률(-6.4%p), 내수판매량(연평균 -7.3%)이 하락하였고, 특히 '23년부터 내수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되면서, 투자수익률, 현금 흐름, 1인당 부가가치 등이 악화되고, 1인당 임금이 하락하는 등 국내산업 지표에 피해사실이 확인됨
- 조사실은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주요 국내산업 지표 전반에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므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기로 함

IV. 덤핑물품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1. 덤핑물품과 국내산업 피해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 제1항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

○ WTO반덤핑협정 제3.5조

덤핑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

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 조사실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함
 - 첫째,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연평균 -5.0%) 덤핑물품 수입량도 다소 감소하였으나(연평균 -1.6%) 동종물품 내수 판매량은 더 크게 하락(연평균 -7.3%)하였고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5.5%p)한 반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5.7%p)하였음
 - 둘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동종물품에 비해 지속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가격비율이 '20년 xxx%에서 '22년 xxx%로 상승하다, '23년부터 xxx%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상승억제에 영향을 미침
 - 동종물품 제조원가는 연평균 5.2% 상승하였으나, '22년을 제외하고는 덤핑물품 판매가격이 동종물품 제조원가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저가에 판매되면서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3.4%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셋째,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저가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동종물품의 생산량(연평균 -2.7%)및 가동률(-6.4%p) 하락, 내수판매량 감소(연평균 -7.3%), 영업이익 감소 및 적자전환, 투자 수익률 및 현금흐름의 악화, 연평균 1인당 임금 하락, 1인당 부가가치 감소 등 국내산업 피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됨
- 조사실은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함

< 주요 국내산업 피해 지표 >

(단위 : 톤, %, 천원/톤, 백만원, 명)

지표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u>1,000</u>	<u>1,043</u>	4.3	<u>1,032</u>	-1.0	<u>833</u>	-19.3	-4.9	-5.0
물량	덤핑물품		<u>1,000</u>	<u>1,101</u>	10.1	<u>1,189</u>	8.1	<u>936</u>	-21.3	4.0	-1.6
	동종물품		<u>1,000</u>	<u>1,018</u>	1.8	<u>965</u>	-5.2	<u>785</u>	-18.6	-11.4	-7.3
시장 점유율	덤핑물품				2.0%p		3.5%p		-1.0%p	3.6%p	5.5%p
	동종물품				-1.5%p		-2.6%p		0.5%p	-4.1%p	-5.7%p
가격	덤핑물품(a)		<u>1,000</u>	<u>1,307</u>	30.7	<u>1,934</u>	48.0	<u>1,300</u>	-32.8	-9.9	5.4
	동종물품(b)		<u>1,000</u>	<u>1,011</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제조원가		<u>1,000</u>	<u>945</u>	-5.5	<u>1,227</u>	29.8	<u>1,429</u>	16.5	-19.2	5.2
	제조원가비중				-5.4%p		7.2%p		15.2%p	-15.7%p	6.3%p
	가격비율(a/b)				16.2%p		24.6%p		-32.1%p	-5.0%p	4.6%p
	목표판매가격(c)		<u>1,000</u>	<u>980</u>	-2.0	<u>1,208</u>	23.2	<u>1,496</u>	23.8	-23.4	5.3
	가격비율(b/c)										
생산량			<u>1,000</u>	<u>1,176</u>	17.6	<u>1,117</u>	-5.0	<u>731</u>	-34.6	32.0	-2.7
가동률					108%p		-3.6%p		-23.7%p	13.3%p	-6.4%p
내수판매량			<u>1,000</u>	<u>1,018</u>	1.8	<u>965</u>	-5.2	<u>786</u>	-18.6	-11.4	-7.3
동종물품 내수	영업이익		<u>1,000</u>	<u>1,428</u>	42.8	<u>1,062</u>	-25.6	(-)	적자전환	적자감소	적자전환
	영업이익률				2.7%p		-3.3%p	(-)	음수전환	음수감소	음수전환
투자수익률			(-)		양수전환		2.5%p	(-)	음수전환	음수감소	음수감소
현금흐름			(-)	(-)	음수확대		양수전환	(-)	음수전환	음수감소	음수감소
연평균 1인당 임금			<u>1,000</u>	<u>967</u>	-3.3	<u>1,072</u>	10.9	<u>912</u>	-15.0	12.9	-0.8
생산성(1인당부가가치)			<u>1,000</u>	<u>793</u>	-20.7	<u>633</u>	-20.2	<u>303</u>	-52.1	음수전환	음수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덤핑물품 이외 요인의 영향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의 영향에 대해 검토
 - 덤핑물품 외의 수입품의 수입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행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중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 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 '22년 xxx톤, '23년 xxx톤, '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8% 감소함
-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1년 xxx%, '22년 xxx%, '23년 xxx%, '24년 상반기 xxx%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0.3%p 증가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덤핑물품 판매가격보다 xxx배 ~ xxx배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기타국산 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입물량은 감소하였고 판매가격도 덤핑물품보다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 현황 >

(단위 : 톤, %, 천원/톤)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수입물량	<u>1,000</u>	<u>1,101</u>	10.1	<u>1,189</u>	8.1	<u>936</u>	-21.3		4.0	-1.6
	시장점유율			2.0%p		3.5%p		-1.0%p		3.6%p	5.5%p
	판매가격(a)	<u>1,000</u>	<u>1,307</u>	30.7	<u>1,934</u>	48.0	<u>1,300</u>	-32.8		-9.9	5.4
기타국산물품	수입물량	<u>1,000</u>	<u>713</u>	-28.7	<u>122</u>	-82.9	<u>364</u>	198.8		28.4	-1.8
	시장점유율			-0.6%p		-1.0%p		0.6%p		0.5%p	0.3%p
	판매가격(b)	<u>1,000</u>	<u>1,236</u>	23.6	<u>1,854</u>	50.0	<u>1,331</u>	-28.2		-20.0	-1.9
	가격비율(b/a)			-0.09%p		0.02%p		0.11%p		-0.45%p	-0.41%p
국내동종물품	판매물량	<u>1,000</u>	<u>1,018</u>	1.8	<u>965</u>	-5.2	<u>785</u>	-18.6		-11.4	-7.3
	시장점유율			-1.5%p		-2.6%p		0.5%p		-4.1%p	-5.7%p
	판매가격	<u>1,000</u>	<u>1,011</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나. 국내소비 변화

- 국내소비 규모는 '21년 4.3% 증가하였다가, '22년 1.0% 감소, '23년 19.3% 감소, '24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5.0% 감소하였음
-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21년 1.8% 증가하였다가, '22년 5.2% 감소, '23년 18.6% 감소, '24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1.4%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7.3% 감소하였음
-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1년 10.1% 증가, '22년 8.1% 증가하였다가, '23년 21.3% 감소 후, '24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6% 감소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국내소비 감소율(연평균 -5.0%)보다 더 큰 폭(연평균 -7.3%)으로 감소했지만,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국내소비 감소율 대비 낮은 수준(연평균 -1.6%)으로 감소하여 국내소비의 변화가 동종물품 내수판매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u>1,000</u>	<u>1,043</u>	4.3	<u>1,033</u>	-1.0	<u>833</u>	-19.3		-4.9	-5.0
덤핑물품 수입		<u>1,000</u>	<u>1,101</u>	10.1	<u>1,189</u>	8.1	<u>936</u>	-21.3		4.0	-1.6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1,018</u>	1.8	<u>965</u>	-5.2	<u>785</u>	-18.6		-11.4	-7.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다. 수출 실적

-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30.9% 증가, '22년 xxx톤으로 16.7% 감소, '23년 xxx톤으로 37.2% 감소, '24년 상반기 xxx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7.0%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9% 감소함
-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6.3%p 증가, '22년 xxx%로 3.2%p 감소, '23년 xxx%로 6.5%p 감소, '24년 상반기 xxx%로 전년 동기대비 6.8%p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0.4%p 증가함
-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감소했고, 수출 비중은 다소 증가했으나 그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0.4%p)으로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수출이 내수부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수출 동향 >

(단위 : 톤, %, 천원/톤)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율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량(a)		<u>1,000</u>	<u>1,164</u>	16.4	<u>1,028</u>	-11.7	<u>735</u>	-28.5		1.3	-7.0
수출	판매량(b)	<u>1,000</u>	<u>1,309</u>	30.9	<u>1,090</u>	-16.7	<u>685</u>	-37.2		17.0	-6.9
	비중(b/a)			6.3%p		-32%p		-65%p		6.8%p	0.4%p
	판매가격	<u>1,000</u>	<u>1,066</u>	6.6	<u>1,522</u>	42.8	<u>1,346</u>	-11.6		-8.3	6.3
내수	판매량(c)	<u>1,000</u>	<u>1,018</u>	1.8	<u>965</u>	-5.2	<u>785</u>	-18.6		-11.4	-7.3
	비중(c/a)			-6.1%p		3.2%p		6.4%p		-7.0%p	-0.6%p
	판매가격	<u>1,000</u>	<u>1,011</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라.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xxx%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는 개미산소다, 아황산, 가성소다임
 - 개미산소다의 톤당 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으로 26.5% 하락, '22년 xxx천원으로 21.0% 상승, '23년 xxx천원으로 46.4% 상승, '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2%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4.0% 상승함
 - 아황산소다의 톤당 가격은 '20년~'21년 xxx천원에서 '22년 xxx천원으로 62.2% 상승, '23년 xxx천원으로 5.9% 하락, '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3.1% 상승함
 - 가성소다의 톤당 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으로 3.9% 하락, '22년 xxx천원으로 15.8% 상승, '23년 xxx천원으로 3.8% 상승, '24년 상반기 xxx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7% 상승함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의 변동이 재료비 변동 방향과 같은 기간이 일부('22년, '24년 상반기) 있으나 그 변동폭이 재료비 변동폭보다 작았음
 - 조사대상기간 동안 재료비가 연평균 6.4% 증가한 데 비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특히 '23년의 경우 재료비가 6.3% 상승했음에도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1.1% 하락한 바, 덤핑물품의 지속적인 저가판매가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 억제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상에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재료 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u>	<u>1,011</u>	1.1	<u>1,201</u>	18.8	<u>1,188</u>	-1.1		-5.2	3.4
단위당 제조원가(a)		<u>1,000</u>	<u>945</u>	-5.5	<u>1,227</u>	29.8	<u>1,429</u>	16.5		-19.2	5.2
재료비(b)		<u>1,000</u>	981	-1.9	1,257	28.1	1,336	6.3		-11.4	6.4
개미산소다		<u>1,000</u>	735	-26.5	889	21.0	1,302	46.4		-22.2	4.0
아황산		<u>1,000</u>	1,000	0.0	1,622	62.2	1,526	-5.9		0.5	13.1
가성소다		<u>1,000</u>	961	-3.9	1,113	15.8	1,155	3.8		-12.8	1.7
재료비 비중(b/a)				1.8%p		-0.6%p		-4.3%p		4.5%p	2.1%p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307</u>	30.7	<u>1,934</u>	48.0	<u>1,300</u>	-32.8		-9.9	5.4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마. 이해관계인 의견 및 조사실 검토

< 수입자 주장⁶⁶⁾>

- '23년 국내산업의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 악화는 차아황산소다의 주요 수요처인 국내 섬유산업의 침체, 대체재(환원제N-RC, 티우레아디옥사이드 등) 판매 등으로 인한 국내소비 감소의 영향임

< 신청인 주장⁶⁷⁾>

- 수입자가 주장한 대체품들은 현재 국내 업체들이 조사대상물품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다른 화학제품을 섞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동종물품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물품임
- '23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재 성격의 섬유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원료인 차아황산소다의 소비도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연스러운 경기변동에 의한 것임
- '23년에 국내산업이 적자 상황에 직면한 주된 이유는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덤핑물품의 낮은 가격 때문에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임

66) 다부씨엔에스, 청원물산, 팔사코리아 수입자답변서('25.1.2.24., 1.31. 제출), 이해관계인 이후 의견서('25.3.11., 3.28. 제출)참조

67) 국내생산자 추가의견서('25.4.8. 제출) 등 참조

- 차아황산소다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어렵다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이해관계자 중 국내생산자는 마이너스 이익률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수입자는 견조한 이익을 내고 있음

< 조사실 검토>

- 대체재로 인한 동종물품 판매량 변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국내소비 변화로 인한 영향은 '나. 국내소비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영향이 제한적임

바. 기타 요인

- 이상의 검토 항목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 요소로 열거된 외국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등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주장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음

바. 소결

- 조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0.3%p)했으나, 수입물량은 감소(연평균 -1.8%)하였고, 판매가격이 덤핑물품 대비 높은 수준(xxx~xxx배)으로 유지되었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연평균 -7.3%) 국내 소비 감소율(연평균 -5.0%)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연평균 -1.6%)은 국내소비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여 국내소비 변화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임

-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감소(연평균 -6.9%)했고, 수출 비중은 다소 증가(0.4%p)했으나 그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으로,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수출이 내수판매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임

- 동종물품 판매가격 변동이 재료비 변동 방향과 같은 기간이 일부 있었으나, 그 변동폭이 재료비 변동폭보다 작았고, 재료비 상승에도 판매가격이 하락한 기간이 있는 등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로 인한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하락과 상승억제가 국내 산업 피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 조사대상기간 동안 국내소비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업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동종물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키고 상승을 억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덤핑물품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상승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하락하여 적자 상태가 유지되었고, 생산량, 가동률, 내수판매량,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임금, 부가가치 등 국내산업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됨
-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감소하였고 판매가격 또한 덤핑물품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국내소비 감소폭보다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은 더 컸으며,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조사실은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V.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1. 예비공정 판정 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잠정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 (i)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고 동 사실이 공표되고 이해당사자에게 정보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며;
- (ii) 덤핑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 (iii) 관계당국이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함

1) 부과대상물품

- 정의 : 가성소다⁶⁸⁾, 개미산소다⁶⁹⁾, 액체무수아황산⁷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⁷¹⁾, 건조하여 제조하는, Na₂S₂O₄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
- 관세분류 : HSK 2831.10.1000

2)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덤핑률
중국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15.15%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33.97%
	그 밖의 공급자	33.97%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사유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국내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 저가에 판매되며 동종 물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인상을 억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생산량, 가동률, 영업이익 등 국내산업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됨

68) 가성소다(NaOH) :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한 물질이며, 수용액을 순수리말로는 양젯물이라 함.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이라고도 불리며, 수용액은 무색 무취의 강한 알칼리성을 지니고 있음. 기초화학제품으로, 섬유, 비누, 제지, 식품, 전자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69) 개미산소다(HCOONa) : 영문명은 Sodium Formate 이며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흡습성이 있어 물에 녹이기 쉬우며 에틸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음. 용도로는 귀금속용 침전제 분석, 수렴제, 직물 염색 및 인쇄, 전기도금제 등에 사용됨.

70) 액체무수아황산(L-SO₂) : 유황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화학물질로서 섬유 및 펄프의 표백제 및 착색제 제조시 사용되며, 식품첨가, 전분제조, 자동차 주물틀 정화 등에 사용됨.

71)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이 섭씨 80도 가량의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결합하여 차아황산소다가 합성되며,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 이상의 증거 및 검토를 통해 국내산업이 덤핑물품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53조제1항,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예비부정 판정 시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함
-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함

참고 1

국내산업피해 조사 경과

- '24.10.14. : 한솔케미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 '24.12.18.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20호)
- '24.12.27.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질의서 송부
- '25.1.24. : 청원물산^{국내수입자} 답변서 제출
- '25.1.31. : 팔사코리아^{국내수입자}, 다부씨엔에스^{국내수입자}, 대영화공^{국내수입자},
수요자A사^{국내수요자} 답변서 제출
- '25.2.7. : 한솔케미칼^{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 '25.2.10. : HK한국트레이드^{국내수입자} 답변서 제출
- '25.2.12. : 산업피해조사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통지
- '25.2.24. : 한솔케미칼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 제출
- '25.2.25. : 다부씨엔에스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 제출
- '25.3.6. : 산업피해조사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25.3.10. : 산업피해조사 관련 제2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통지
- '25.3.11. : 다부씨엔에스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의견서 제출
- '25.3.12. : HK한국트레이드^{국내수입자} 답변서 제출
- '25.3.13. : 청원물산 제2차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제출
- '25.3.17. : 한솔케미칼 제2차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 제출
- '25.3.28. : 청원물산 제2차 이해관계인 회의 이후 의견서 제출
- '25.3.28. : 청원물산 수입자 답변서 수정 제출
- '25.4.8. : 한솔케미칼 생산자 추가의견서 제출

참고 2

덤핑사실 조사 경과

- '24.10.14. : 한솔케미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 '24.12.18.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4-20호)
- '24.12.20.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질의서 송부
(답변기한 : '25.1.31.)
- '25. 1. 10.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진허)
- '25. 1. 23. : 답변기한 연장신청(진허)
- '25. 1. 24. : 답변기한 연장 통보('25.1.31. → '25.2.3., 3일 연장, 진허)
- '25. 1. 31. : 조사대상공급자 답변서 미제출(마오밍)
- '25. 2. 3. : 답변서 접수(진허)
- '25. 4. 11.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통보
- '25. 4. 18.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무역조사실

무역조사실장 정석진

조사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류동희
조사관 산업피해조사과 임예은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지원과장 김영운
조사관 덤핑조사지원과 이배화